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고영민 소유물건 (2025타경 31268)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최상욱
감정평가서 번호	대한 제250519-17-0004호



2025 .05. 29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대한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텐츠허브 8층
TEL : (053)761-7890 FAX : (053)761-7888



(주)대한감정평가법인
KOREA APPRAISAL CO., LTD.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영수

이영수



(주)대한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장 최탁수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칠억육천사백삼십만이천육백원정 (₩764,302,6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최상욱	감정평가목적	경매
채무자	-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경매2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고영민 (2025타경 31268)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2025.05.23	2025.05.22 2025.05.23
			작성일
			2025.05.26

감정평가 내용	공부(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단가(원/m ²)	금액(원)
토지		197.6	토지	197.6	2,470,000	488,072,000
건물		468.36	건물	468.36	-	273,990,600
(제시외 건물)		(11.2)	건물	11.2	200,000	2,240,000
		이	하	여	백	
	합계				₩764,302,6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김경곤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소재 '성서용산시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경매2계)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대상물건의 개요

대상물건 전경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가. 토지

대상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조건	형상 지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444-14	대	197.6	1종일주	주상용	종로 한면	세장형 평지	1,338,000

나. 건물

대상 건물	소재지	건물구조 / 지붕 층 수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건축물대장상 주 용 도	사용승인 일자
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444-14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지상4층	468.36	59.26	237.02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001.01.04
ㄱ		기존벽체이용 및 판넬조 판넬지붕 1층	11.2	-	-	-	-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5월 23일입니다.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본건 평가대상 물건에 대하여 2025년 05월 22일, 23일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시 대상물건의 존재 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된 목록과 현황과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인 및 기타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등

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가. 본건의 내부구조, 설비 및 마감상태는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건물 외관상태 및 유사 건물의 표준적인 내부구조, 사용자재 및 통상적인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 기호㉠은 개략적인 실측에 의한 면적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여 일괄 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건 기호(가) 1층은 공부상 “소매점, 차고”이나, 실제 “소매점”이며, 기호(가) 4층 다가구주택(1가 구)은 실제 다가구주택(2가구)으로 조사되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의 근거 및 적용

1. 감정평가의 근거

가. 근거 법령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p>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p>제11조 [감정평가방식]</p>	<p>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p>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2. 대상물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가. 토지의 감정평가

토지는 시장자료가 풍부하여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2조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또 다른 비교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건물의 감정평가

건물은 객관적인 원가자료가 풍부하여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개별건물의 특성상 시장자료 및 수익자료의 수집, 분석, 배분이 곤란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원가법은 구조, 용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에서 경과연수, 현상, 잔존내용연수 등을 고려한 감가수정 금액을 공제하여 현재 가치를 구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토지 감정평가액

가. 토지 감정평가에 참고한 가격자료

1) 대상물건 거래사례

최근 3년 이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인근지역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면적(㎡)		거래시점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토지	건물			
	용산동 000-0	1종일주	대	207.1	408	2025.03.03	760,000,000 (건물포함)	약 2,240,000
a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개요 : 철근콘크리트구조(사용승인일 : 2006.09.21), 면적 : 408㎡ · 건물단가 : 1층: 900,000원/㎡×32/50 = 576,000원/㎡, 2층~4층: 1,200,000원/㎡×32/50 = 768,000원/㎡ · 토지추정단가 : [760,000,000원 - {(576,000원/㎡×92.82㎡) + (768,000원/㎡×315.18㎡)}] / 207.1㎡ ≒ 2,240,000원/㎡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대상물건 평가사례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면적 (㎡)	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비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444-14	1종일주	대	주상용	197.6	담보	2022.05.26	2,340,000	-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전산센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인근지역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면적 (㎡)	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	용산동 000-00	1종일주	대	주상용	226.6	시가 참고	2023.08.11	2,600,000
㉡	용산동 000-0	2종일주	대	주상용	222.2	경매	2025.04.03	3,050,000
㉢	용산동 000-0	1종일주	대	주거용	183	경매	2024.09.23	1,567,000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전산센터]

5)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비고
1종일주	주상용	중로한면	2,500,000원/㎡ 내외 수준	위치 및 도로조건 등에 따라 가격격차 있을 수 있음.

6) 경매 낙찰가율

지역 / 기간		대구/달서구 2024년 05월~2025년 04월					
구 분	총감정가	낙찰가			낙찰건수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주택	22,338,187,710원	13,635,024,365원	61%	105건	29건	27.6%	
근린주택	5,338,111,500원	3,970,370,000원	74.4%	19건	4건	21.1%	
다가구	8,654,077,570원	5,327,193,335원	61.6%	24건	7건	29.2%	
단독주택	8,345,998,640원	4,337,461,030원	52%	62건	18건	29%	
다세대	2,623,022,860원	1,401,891,000원	53.4%	62건	14건	22.6%	
상가	18,411,929,870원	10,229,286,000원	55.6%	83건	13건	15.7%	
근린상가	16,943,621,670원	9,487,030,000원	56%	68건	9건	13.2%	
점포	464,308,200원	328,016,000원	70.6%	3건	1건	33.3%	
토지	7,152,038,990원	6,319,510,000원	88.4%	21건	6건	28.6%	
대지	6,970,912,000원	6,212,000,000원	89.1%	7건	3건	42.9%	

[최근 1년간 해당 지역 용도별 평균 낙찰가율 (출처 : 인포케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가장 비슷한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조건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대상 토지
A	용산동 457-6	175.8	대	주상용	1종일주	중로 한면	세장형 평지	1,338,000	1

[공시기준일 : 2025.01.01]

2)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까지 조사·발표되지 않은 기간의 지가변동률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대상 토지	비교 표준지	지역 및 용도지역 (산정기간)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산정
1	A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거지역) (2025.01.01~2025.05.23)	0.248% (1.00248)	$(1+0.00206) \times (1+0.00055 \times 23/30)$ ≈ 1.00248

3)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개별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각각의 조건에 따른 항목(세항목)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지대[본건 기호 1/표준지 기호 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검토의견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1.00	대체로 유사함.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대체로 유사함.
환경 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1.00	대체로 유사함.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1.01	본건 토지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하고 있는바, 접면도로상태에서 다소 우세함.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적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1.00	대체로 유사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체로 유사함.
격 차 율				1.01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및 대법원 판례[2003다38207판결(2004.05.14 선고), 2002두5054판결(2003.07.25.선고)]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하였습니다.

나) 그 밖의 요인 보정 산식

$$\frac{\text{사례 기준 표준지 단가(사례 토지단가 \times 사정보정 \times 시점수정 \times 지역요인 비교 \times 개별요인 비교)}}{\text{시점수정된 표준지 단가(표준지공시지가 \times 시점수정)}} =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1) 비교사례의 선정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지리적 접근성, 가치형성요인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상기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중 아래의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비교 사례	사례 구분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면적 (㎡)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적용
㉠	시가 참고	용산동 000-00	1종일주	대	주상용	226.6	2023.08.11	2,600,000	표준지 A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격차율 산정

구분	사례단가(원/㎡) 공시지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비고
	1,338,000	-	1.00248	-	-	1,341,318		
산출 내역	사정보정	- 별도의 보정요인 없음.						
	시점수정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거지역)			(2023.08.11~2025.05.23)			
	지역요인	- 비교사례는 비교표준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10	0.85	1.00	1.00	1.00	1.00	0.935	
	-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위에서 산정한 격차율 및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및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비교 표준지	비교사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③	1.8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대상 토지	비교 표준지	표준지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A	1,338,000	1.00248	1.00	1.010	1.83	2,479,159	2,470,000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대상토지	토지단가(원/㎡)	면적(㎡)	시산가액	비고
1	2,470,000	197.6	488,072,000	-
합 계			488,072,000	

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비교사례 선정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지리적 접근성, 가치형성요인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상기 거래사례 중 아래와 같이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비교 사례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면적 (㎡)	거래시점	토지단가 (원/㎡)	대상 토지
a	용산동 000-0	1종일주	대	주상용	207.1	2025.03.03	2,240,000	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사정보정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치수준 대비 적정하게 거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1.00)

3)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비교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까지 조사·발표되지 않은 기간의 지가변동률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대상 토지	비교 사례	지역 및 용도지역 (산정기간)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산정
1	a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거지역) (2025.03.03~2025.05.23)	0.139% (1.00139)	$(1+0.00045 \times 29/31) \times (1+0.00055) \times (1+0.00055 \times 23/30)$ ≈ 1.00139

4) 지역요인 비교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동일한 가치형성요인을 지니므로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개별요인 비교

비교사례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각각의 조건에 따른 항목(세항목)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지대[본건 기호 1/비교사례 기호 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검토의견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1.15	가로의 폭 등에서 우세함.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0.95	공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환경 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1.00	대체로 유사함.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1.01	본건 토지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하고 있는바, 접면도로상태에서 다소 우세함.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적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1.00	대체로 유사함.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체로 유사함.
격 차 율				1.10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대상 토지	비교 사례	비교사례 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산정 단가 (원/㎡)	결정 단가 (원/㎡)
1	a	2,240,000	1.00	1.00139	1.00	1.103	2,474,154	2,470,000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대상토지	토지단가(원/㎡)	면적(㎡)	시산가액	비고
1	2,470,000	197.6	488,072,000	-
합 계			488,072,000	

라. 시산가액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할 때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토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감정평가액(원)
1	488,072,000	488,072,000	488,072,000
합 계	488,072,000	488,072,000	488,07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건물 감정평가액

가. 대상건물 동별·층별 개요

대상 건물	구 분	구 조 / 지 붕	용 도	면적(㎡)	사용승인일자	비 고
가	1층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소매점, 차고	117.09	2001.01.04	실제: 소매점
	2층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다가구주택 (3가구)	117.09		-
	3층		다가구주택 (3가구)	117.09		-
	4층		다가구주택 (1가구)	117.09		실제: 다가구주택 (2가구)
ㄱ	1층	기존벽체이용 및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11.2	-	-

나. 재조달원가의 결정

1) 표준단가 결정

가)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원/㎡)	내용년수	기준
01-01-02-09	일반주택	벽돌조/평지붕	2	1,792,000	45 (40~50)	2024.01
06-01-05-09	점포주택 (상가주택)	철근콘크리트조/저층(5층이하) /평지붕	2	1,575,000	50 (45~55)	2024.01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부동산연구원 발행 「2024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표준단가 결정

건물의 표준단가는 「2024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을 기준으로 대상건물 구조, 용재, 시공의 정도 및 건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대상 건물	구 분	이용상황	구조	표준단가 (원/㎡)	비고
가	1층	소매점	철근콘크리트조	900,000	-
	2~4층	다가구주택	시멘트벽돌조	1,200,000	-
ㄱ	1층	창고	기존벽체이용 및 판넬조	300,000	-

2) 부대설비 보정단가

대상 건물	냉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 설비 (2~4층)	기타설비
가	-	○	-	-	○	-
보정단가 (원/㎡)	표준단가에 포함하였음.					
ㄱ	-	-	-	-	-	-
보정단가 (원/㎡)	별도의 보정요인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재조달원가의 결정

대상 건물	구 분	표준단가 (원/㎡)	부대설비 보정단가 (원/㎡)	재조달원가 (원/㎡)	비 고
가	1층	900,000	-	900,000	-
	2~4층	1,200,000	-	1,200,000	-
ㄱ	1층	300,000	-	300,000	

다.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 결정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액을 공제하여 기준시점의 대상물건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하며, 대상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가수정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되, 기호(ㄱ)은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습니다.

대상 건물	구 분	재조달원가 (원/㎡)	사용승인일	경제적 내용 연수	물리적 경과 연수	잔존내용연수		적용단가 (원/㎡)
						관찰감가 적용시	적용잔존 내용연수	
가	1층	900,000	2001.01.04	50	24	-	26	468,000
	2~4층	1,200,000						624,000
ㄱ	1층	300,000	-	30	-	20	20	2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대상건물의 감정평가액

대상 건물	구 분	면적(㎡)	건물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가	1층	117.09	468,000	54,798,120	-
	2~4층	351.27	624,000	219,192,480	-
ㄱ	1층	11.2	200,000	2,240,000	
합 계		479.56	-	276,230,600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장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된 방법에 의한 토지·건물 감정평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상 토지·건물 일괄한 원가방식이나 수익방식 적용이 곤란하여 다른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 하였습니다.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 지	488,072,000	상세내역은 후첨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건 물	273,990,600	
제시외건물	2,240,000	
총 액	764,302,600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서

<기준시점:2025-05-2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444-14	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97.6	197.6	2,470,000	488,072,000	
가	" [도로명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동네로 91	" 위지상	단독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4층					
			소매점, 차고	철근콘크리트조 1층	117.09	117.09	468,000	54,798,120	900,000 x 26/50 실제: 소매점
			주택 (3가구)	시멘트벽돌조 2층	117.09	351.27	624,000	219,192,480	1,200,000 x 26/50
			주택 (3가구)	시멘트벽돌조 3층	117.09				
			주택 (1가구)	시멘트벽돌조 4층	117.09				실제: 주택 (2가구)
소 계								₩762,062,600	
(제시외 건물)									
ㄱ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444-14 지상	참고	기존벽체이용 및 판넬조 판넬지붕 1층	(11.2)	11.2	200,000	2,240,000	300,000 x 20/30 관찰감가
합 계								₩764,302,6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성서용산시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및 근거리 도시철도 2호선(이곡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시설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폭 약 7미터의 보행자 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단독주택용지),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종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기타(택지개발사업완료)<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지상4층 건으로서,
- 외 벽: 화강석 붙임, 외장 석재 치장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 내 벽: 타일, 벽지 등 마감,
- 바 닥: 타일, 장판지 등 마감,
- 창 호: 알루미늄 샷시 및 하이샷시 창호 등입니다.

- ㄱ) 기존벽체이용 및 판넬조 판넬지붕 지상 1층건으로서,
- 외 벽: 몰탈위 페인팅, 판넬 등 마감,
- 내 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 바 닥: 타일 등 마감,
- 창 호: 알루미늄 샷시 등 마감입니다.

(2) 이용상태

- 가) 소매점 및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ㄱ) 참고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

- 가)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난방설비(2층~4층) 등이 되어 있습니다.
ㄱ)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

- 가. 본건 기호(가) 1층은 공부상 "소매점 및 차고"이나, 실제 "소매점"입니다.
나. 본건 기호(가) 4층은 공부상 "다가구주택(1가구)"이나, 실제 "다가구 주택(2가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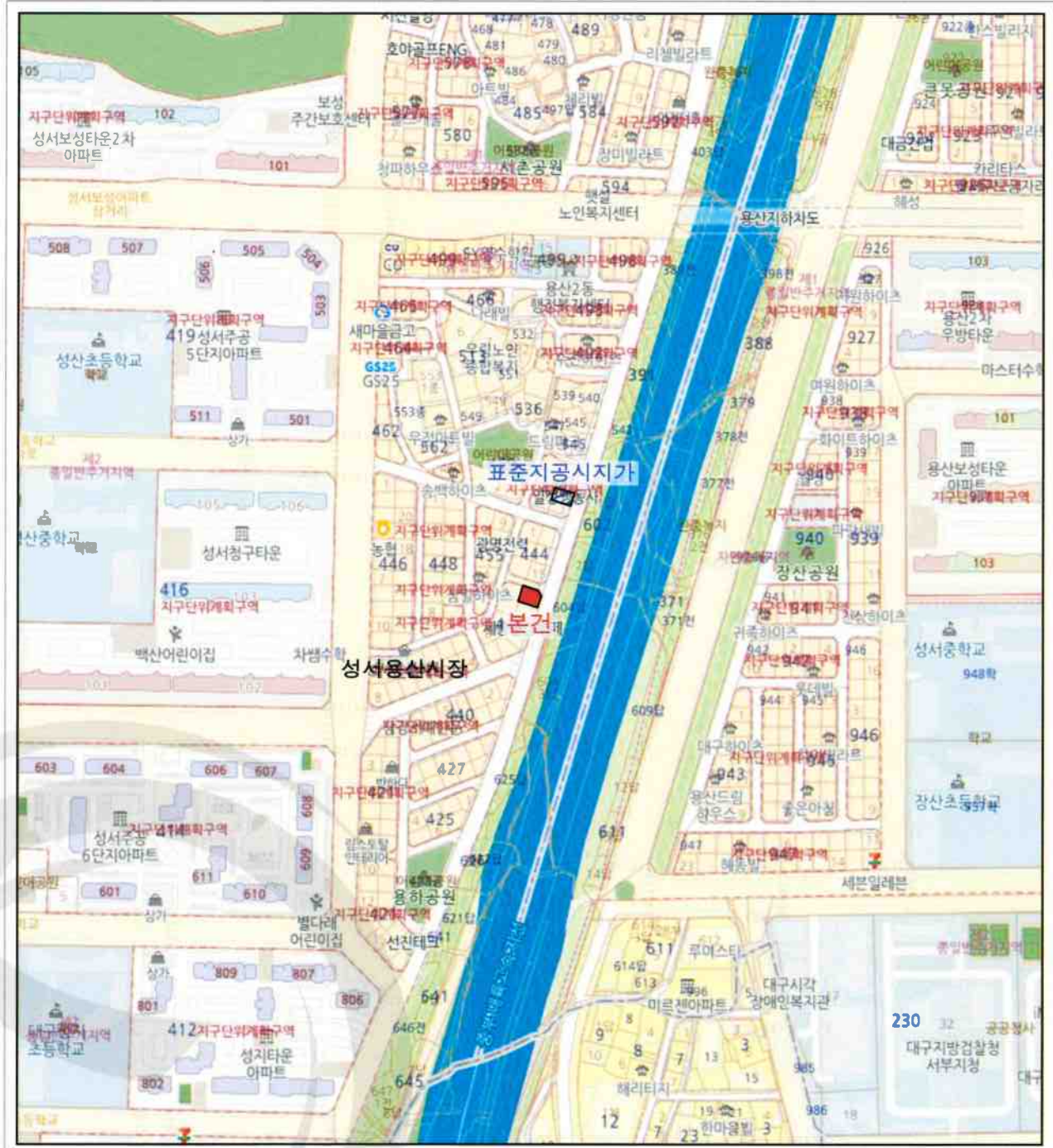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나. 기타사항: 없습니다.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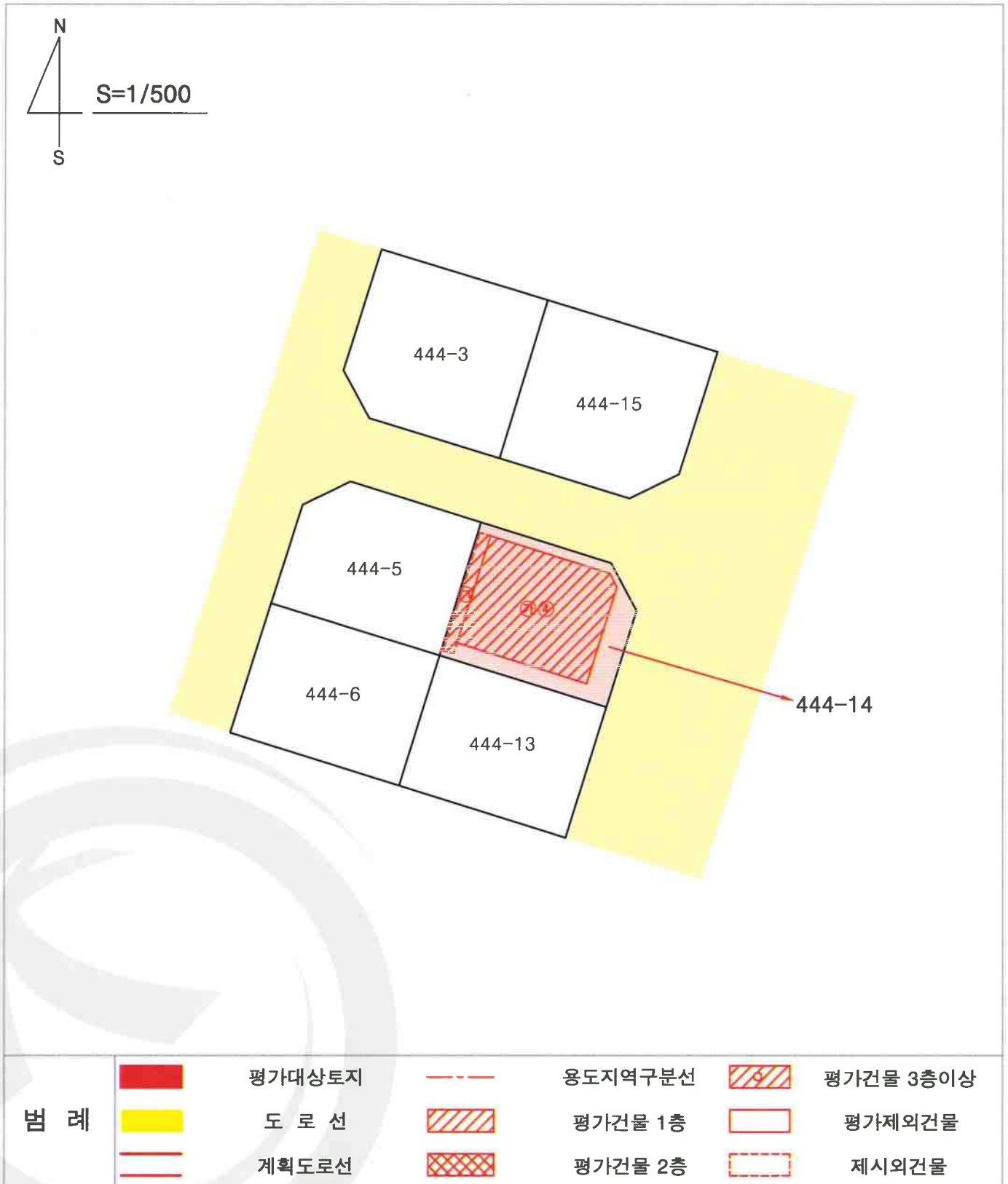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444-1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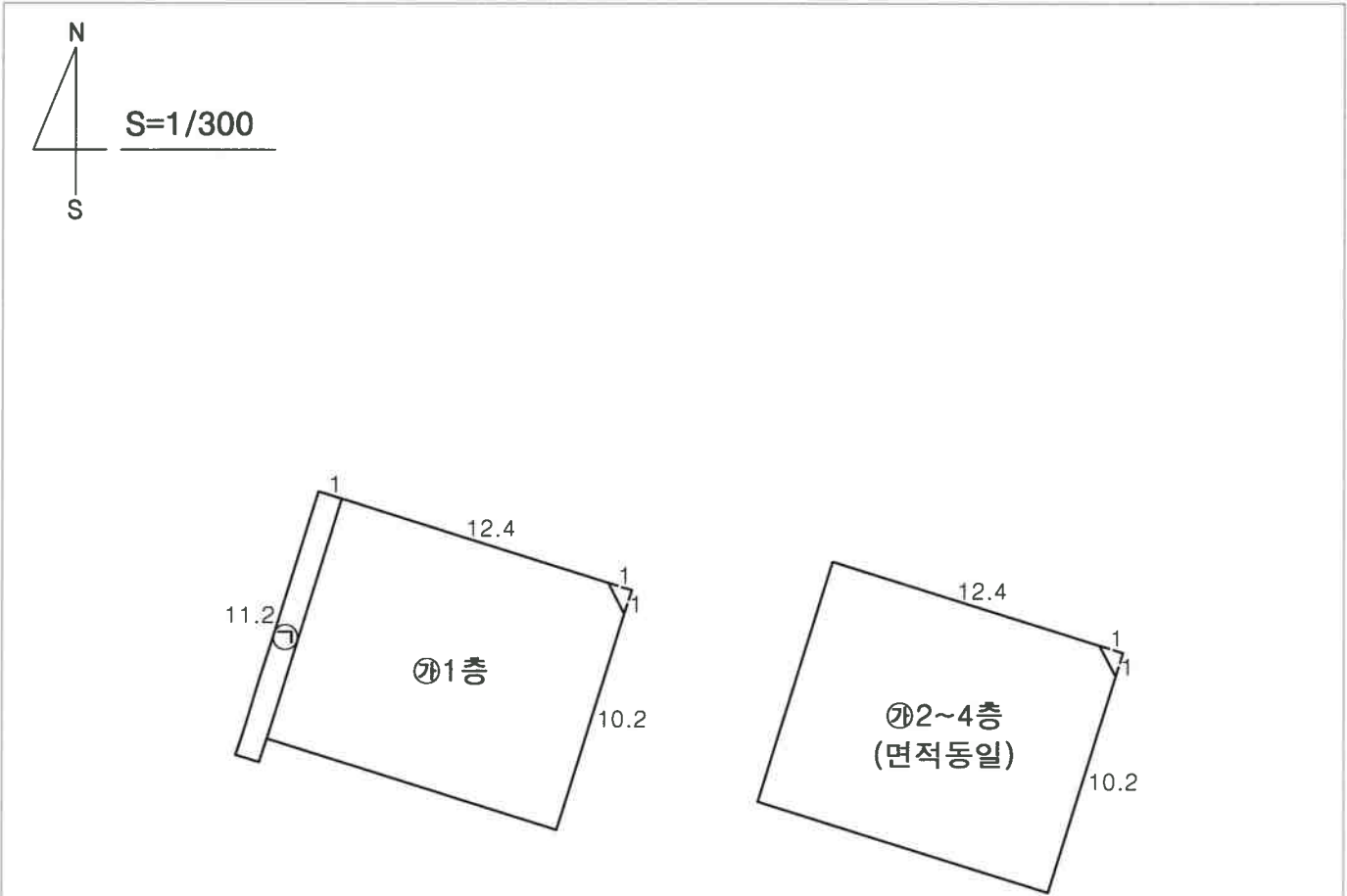


구분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금액(원/㎡)
표준지공시지가	용산동 457-6	175.8	대	주상용	1종일주	1,338,000

지적 및 건물개황도



지적 및 건물개황도



면적산출근거

㉔1~4층(면적동일): $(12.4 \times 10.2) - (1 \times 1 \times 0.5) \approx 125.9\text{m}^2$

제시외건물

㉕기존벽체이용 및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참고): 약 11.2m²

범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3층이상
		도로선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2층		제시외건물

사진 용지



본건 전경(남동측에서 촬영)



본건 전경(북서측에서 촬영)

사진 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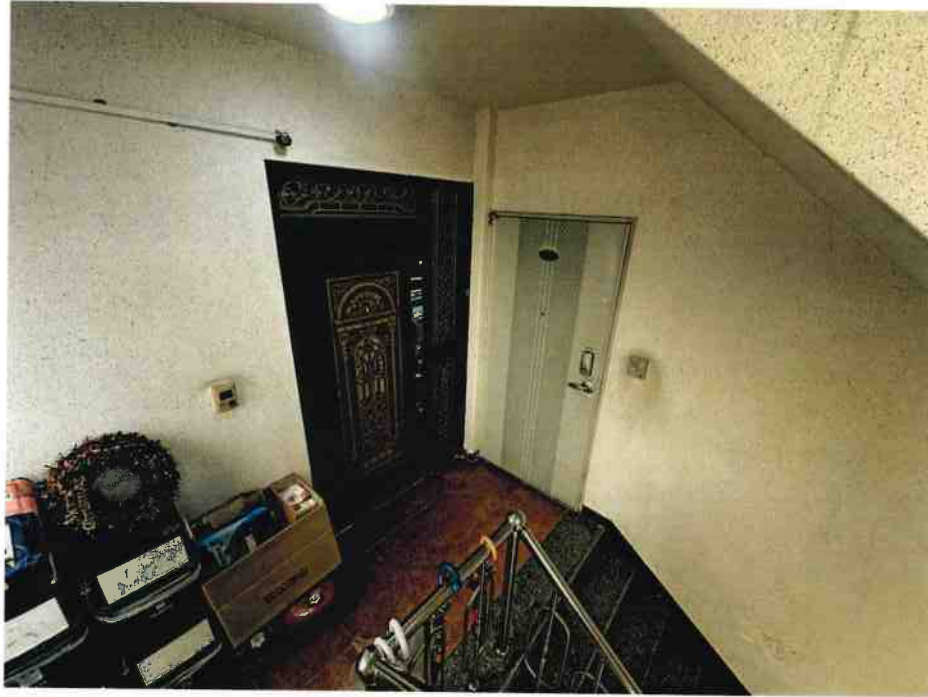


기호(가) 2층 전경



기호(가) 3층 전경

사진 용지



기호(가) 4층 전경



제시외건물 ㉠